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642호 2023. 10. 18.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1188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1

○ 정선군 공고 제2023 -1195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

○ 정선군 공고 제2023-1214호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1

○ 정선군 공고 제2023-1217호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공시송달 공고……15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25호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6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26호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1188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정 선 군 수

1. 전자우편 주소 : jswebmaster@korea.kr

2. 접수기간 : 2023. 11. 12.(일) ~ 2024. 2. 10.(토)

※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

붙임 1 국외부재자신고서(서식)

[별지 제59호의4서식] (규칙 제136조의4제1항 관련) <개정 2019. 5. 30.>

<앞쪽>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뒤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서[1)]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자	(서명)

성 명[2)]	한 글		영 문 (대문자)	
여 권 번 호	☐☐☐☐☐☐☐☐☐		※ 여권번호는 왼쪽부터 적습니다.	
신 분 에 따른 구분[3)] ※해당 칸에 ☑표한 후 기재	☐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소 (주민등록표상)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말 소 된 주민등록번호	☐☐☐☐☐☐ - ☐☐☐☐☐☐☐	
		대 한 민 국 최종주소지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생 년 월 일	☐☐☐☐ - ☐☐ - ☐☐	성 별 (해당 칸에 ☑표) 남 ☐ 여 ☐
		등록기준지 (본 적 지)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부 모 성 명[4)]	아버지 성 명 ☐☐☐☐☐	어머니 성 명 ☐☐☐☐☐
연 락 처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	전화번호[5)] (가정·직장 등)	(국가번호) ☐☐☐☐ - (지역번호)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5)]	☐☐☐☐ - ☐☐☐☐ - ☐☐☐☐ - ☐☐☐☐		
	전자우편[6)] (E-mail)	☐		
국 외 거 소[7)]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 ※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		거류국명		우편번호
		주 소		☐ 공관을 거소로 신고할 사람 (☑표한 후 "주소"칸에 공관명만 기재)
				투표예정공관[8)]
외국국적 보유여부 ※ 복수 국적자만 기재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국적보유 국가명			
	외국국적 취득사유	☐ 출생 ☐ 혼인 ☐ 입양 ☐ 인지 ☐ 기타( )		

본인은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218조의5)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를(을) 하며,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수형정보,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신 청 인)[9)] : (서명 또는 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정선군수 귀하

<뒤쪽>

※ 유 의 사 항

1. 이 신고·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신청인에게 불이익(재외선거인명부등 미등재, 선거정보 수신불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은 정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3. 거짓으로 신고·신청을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

※ 작 성 요 령

1.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 표시를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성명"**칸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영문 포함)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신분에 따른 구분"**칸에는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 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대한민국 최종주소지"를 적어야 하며,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 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적고 "성별"의 해당 칸에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부모 성명"**칸에는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본적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칸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사무실 등의 전화번호(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요건확인,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 투표기간·장소 등 안내, 그 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되므로 외국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연락 가능한 대한민국 내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E-mail)"**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발송하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송부,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여부 통지, 이의신청 결과 안내, 투표기간·장소·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7. **"국외거소"**칸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현지어를 추가로 적을 수 있음)로 반드시 점선 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직장·생업·이사·주소불확정·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표시 후 "주소"칸에 공관명만을 적습니다.
8. **"투표예정공관"**칸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9. 끝부분의 **"(신고인)·(신청인)"**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붙임 2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문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3. 11. 12.(일) ~ 2024. 2. 10.(토)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jswebmaster@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붙임 3 관계 법령(공직선거법)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국회의원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
5. 여권번호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1195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차별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경쟁 촉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24년(′ 23년 실적) 합동평가 집중관리지표로 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과도한 경쟁 제한 조항 내용 완화(안 제3조의4 제1항)
   -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 문구에서 “우선” 삭제

3. 일부개정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10.11. ~ 2023.10.31.(20일)

5.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건설과
- 연 락 처 : 전화 033-560-2162, 팩스 033-560-2099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의 제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 고용하도록”을 “고용하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① 군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의4(지역건설근로자 고용) ① ---------- 고용하도록 ----------. ② (현행과 같음)

정선군 공고 제2023-1214호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일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정 선 군 수

1. 관련근거
 ○「정선군 반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특정지역 인구 집중 등에 따라 행정구역(반) 조정을 통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 추진

3. 주요내용
 가. 규칙 별지에서 신동읍 조동6리와 남면 무릉5리의 반을 조정

조 정 전				조 정 후				조 정 사 유
리	반명	가구	인구	리	반명	가구	인구	
신동읍 조동6리	1반	140	180	신동읍 조동6리	9반	62	69	주민 건의
					10반	53	84	
					1반	25	27	
남면 무릉5리	9반	56	92	남면 무릉5리	9반	25	48	
					10반	31	44	

 나. 규칙 별지의 서식 일부 변경(표 서식, 읍면 반의 수 기입 등)

4. 개정 규칙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3. 10. 16. ~ 2023. 11. 06.(21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총무행정관)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연락처 : 전화(033-560-2236), 팩스(033-560-2590)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2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1217호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및 같은 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정비, 자진철거, 직권철거)를 하려 했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정 선 군 수

1. 공고내용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행정지도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0. 17. ~ 2023. 11. 16 (30일간)

3. 공고방법 : 일간신문,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

5. 공고대상 :

구분	위치 (정선군)	용도	구조	소유자	정비방안
1	고한읍 고한리 281번지 일원 ※고한읍생태산림욕장 및 약수터 부근	주택	목조 슬레이트지붕	미상	-정비(개축,수선) -철거
2		주택	목조 슬레이트지붕	미상	

6. 기타사항

가. 상기 건축물(빈집)의 안전관리를 요청드리며, 향후 해당 빈집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선군 건축팀(033-560-24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25호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정선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및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하였고, 일상 속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안 제4조)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사항(안 제5조)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이동주차 권고 사항 규정(안 제7조)
❍ 다중이용시설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권고(안 제8조)

3. 예고기간 : 2023. 10. 16 ~ 10. 21.(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1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17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sbonnie@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정선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선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정선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차량의 이동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표지(제5조 관련)

1. 바닥면

가. 규격 : 가로 2.3미터, 세로 5미터

나. 도안

2. 안내표지판

가. 규격 :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

나. 도안

관 계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

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

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26호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정선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 1인가구 증가·비대면 소비 급증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여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 등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권장(안 제4조~안 제5조)

❍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한 우수업소를 선정(안 제6조)

❍ 1회용품 줄이기 실태조사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 교육·홍보 (안 제7조~안 제8조)

❍ 1회용품 줄이기 공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예고기간 : 2023. 10. 16 ~ 10. 21.(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1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17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sbonnie@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읍·면출장소

나. 정선군의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4. 군이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우수업소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코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지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